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공시시기】: 2024년 6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시내용】: 대학의 원격강좌 개설 현황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3. 3. 1. ~ 2024. 2. 28.(2023학년도 1학기, 2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단위: 건, 명)

학문분야	원격강좌(우리대학 학생 → 우리대학 강좌수강)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강좌수	수강자수	군복무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군복무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군복무 수강자수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융합학과 등									

우리대학 개설 학점교류 원격강좌(타대학 학생 → 우리대학 강좌수강)						공동활용 원격강좌수 (우리대학 학생 수강)	학점교류 협약기관 수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강좌수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강좌수	수강자수		

※ 원격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작성지침

【원격강좌】: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원격 강좌

원격강좌 정의

- 1)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운영이수기준, 가능학점, 평가관리,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원격강좌 정의

-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항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내용 반영
- 2) 기타 원격강좌
 - OCU 또는 KCU와의 협약(회원)을 통해 OCU 또는 KCU에서 제공하는 강좌
 - ※ OCU, KCU의 경우 본교 학생들이 수강하고 학점 인정을 받은 강좌

제외대상 원격강좌

- 해당 강좌가 수업의 보조 자료로 쓰인 경우
- 대학의 원격수업 기준에 따른 원격강좌 이외의 혼합형 강좌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강좌
- 비정규 교과목 중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는 강좌
- 본교에서 원격 강좌를 개설하였으나 수강인원이 없는 경우

【학문분야】: 학과의 경우 대학 자체 학과 계열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함

【학기】: 2023학년도 1, 2학기 및 계절(여름, 겨울)학기(3학기, 4학기 운영 과목은 2학기에 포함)

【강좌수】: 원격강좌로 운영한 강좌수

- ※ 동일 강좌가 매학기 개설된 경우, 학기별로 각각 기입
- ※ 수강은 본 학기, 성적표는 계절학기에 기재되는 경우 운영학기를 계절학기로 선택
- ※ 동일 교과목 분반 시 1개 강좌로 기재

【수강자수】: 전체 강좌 수강자수 합계(군복무 수강자수 포함)

- ※ 수강자 중 'F'학점을 받은 수강자도 수강인원에 포함
- ※ 동일 교과목 분반 시 동일 교과목에 대한 총 수강인원 표기

【군복무 수강자수】: 군복무 학생 원격강좌 수강인원 합계

【공동활용 원격강좌수】: 공문 및 협약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복수의 대학에서 학점 이수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원격수업 강좌를 의미함

- ※ 복수의 국내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격강좌(KNU9, UDEC 등), 혁신공유대학(공동교육과정) 등의 강좌는 포함, 대학이 아닌 공공기관 원격교육 플랫폼(K-mooc 등), 외국대학의 원격교육 플랫폼(COURSERA, edX 등)의 OCW/OER 강좌는 포함하지 않음

【학점교류 협약기관 수】: 학점교류 중인 대학 수

참고

-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1.28.>
-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참고사항

- 대학의 원격강좌 개설 현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고등교육 이러닝 현황조사)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